

컴퓨터프로그램보호제도의 재조명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3년의 결산

국내에서도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1월 16일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및 미국소프트웨어연맹(Business Software Alliance : BSA) 공동 주최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제도의 재조명”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롯데 호텔 2층 크리스탈 블룸에서 성대히 열렸다.

오후 2시부터 공동주최단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세미나는 200여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기처, 법조계, 학계, 한국소프트웨어협회 및 업계, 미국소프트웨어연맹 등 각 분야에서 뽑힌 6명의 연사가 그동안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제도에 대해 연구해 온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 세미나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대중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에 대해 많은 대중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날 연사들의 발표 주제는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정책 방향(柳熙烈 : 과학기술처 기술정책관), 2.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의 최근 동향(金文煥 : 국민대 교수), 3. 지적소유권 보호와 미국소프트웨어연맹의 국제 활동(Mr. Robert W. Holleyman, II : BSA회장), 4.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의 분쟁 사례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방향(高相基 :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사무국장), 5.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의 한국 컴퓨터 산업에 대한 중요성(李凡千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장), 6.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상 구제 수단(梁英俊 : 변호사, 변리사)으로 이들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본다.〈柳泰洙 記〉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정책 방향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컴퓨터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증대하게 되어 정부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제정하고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법 시행 결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의 실효성이 미흡한 점,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법적 범리에 의하여 보호함으로써 아이디어의 보호가 불충분한 점, 프로그램 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 기능이 부여되지 아니한 점, 침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미약한

점 등 현행 보호 제도상 미흡한 사항들이 표출되어 금년중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생산, 유통, 복제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제도를 개선하여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임.

2.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의 최근 동향

1980년 이후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현재에는 전세계적으로 저작권법 원리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일반 저작물과 달리 단순한 표현의 형식보다는 프로그램의 기능이 중요한 것이므로 저작권의 개념을 적절히

심층보도

확장하지 않을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과 보호에 충분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최근 미국의 판례는 저작권법상 표현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프로그램의 처리의 흐름, 즉 수준(Sequence), 구조(Structure), 조직(Organization) 등에 이를 확장하려는 경향이 있음.

일본의 판례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으나 앞으로 논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컴퓨터 프로그램의 적절하고 충분한 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국내에서도 요망됨.

3. 지적소유권 보호와 미국 소프트웨어 연맹의 국제 활동

한국은 현재 퍼스널 컴퓨터의 제조와 이용에 있어 선두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임. 이러한 불법 복제 행위는 기업의 창의성을 감퇴시키고 기술이전을 감소하게 되며 투자를 축소시켜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며 개인적으로는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원인이 됨.

BSA는 한국에서의 불법 복제 상황이 자발적인 준법 정신에 의하여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처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의지를 환영함.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가 조직의 관리에 극히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자 함.

끝으로 한국에서의 불법 복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적 조치로 대응할 자세가 되어 있음을 친명하고자 함.

4.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의 분쟁 사례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방향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주요한 형태로는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본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타인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산업 스파이 사용 등), 사용자가 정당

하게 구입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무단 복제본을 만들어 다른 터미널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음.

이와 같은 침해 행위에 대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 바, 현재까지 제기된 분쟁 사례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음.

〈사안 내용〉: P사의 워드프로세서를 청계천 소프트웨어 업체가 불법 복제하여 판매한 사례.

〈처리 결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1988년 9월 30일 벌금 30만원 약식기소 처분 후 확정됨.

〈문제점〉: 무단 복제 내용에 비하여 벌금액이 과소.

5.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의 한국 컴퓨터 산업에 대한 중요성

소프트웨어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아 극히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복제품의 확산 등으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아직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외국과의 소프트웨어 기술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음.

결국 외국 프로그램 복제품의 사용으로 국내 프로그램 개발과 투자 의욕을 상실케 하며 이는 다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됨.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적절한 보호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열쇠라고 할 수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를 통한 컴퓨터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6.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상 구제 수단

사회의 정보화, 산업의 소프트웨어화가 진전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1987년 7월 1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 상황이

심층보도

개선되어 왔으나 아직도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상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서는 민사상으로 침해행위정지 또는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명예, 신용회복청구권 등이 인정되고 있고 형사상으로는 징역형 및 벌금형에 의한 처벌이 인정되고 있음. 구제 수단의 종류는 다 갖춰져 있으나 각 구제 수단의 구체적 절차 및 집행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됨.

〈73p에서 계속〉

와 共同主管)

— 主題 : 知的재산권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人力資源개발에 관한 國際포럼 ('91.5. 8-11, 國際特許研修院)

7. 產業재산권에 대한 教育 및 弘報기능의 強化

가. 國際특허연수원의 地方移轉을 契機로 한 연수기능의 강화

- 국제특허연수원의 廳舍 移轉(大德연구團地, 1월)
 - 新廳舍 開院式(5월 8일)
 - WIPO사무총장 및 主要國 特허청장 參席
- 연수원 이전에 따른 교육훈련 基盤 構築

나. 새로운 연수과정의 開發

- 연수과정의 擴大
 - '90 : 12個課程 → '91 : 21個課程
- 기업연수 참가 積極 誘導
- 기업현장에서 必要로 하는 교육훈련 實施
- 產業技術의 고도화, 전문화에 따른 연수과정의 세분화
- 산업체재산권 연수의 國際協力 기능 強化
- 전문대학교수 및 연구개발 要員 研修

다. 연수원의 中·長期 발전계획 樹立

이상의 제 논의를 통해 나타난 것은 소프트웨어의 국제성으로, 일국의 차원이 아닌 국제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결론이고 또한 소프트웨어는 표현이 아닌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표현의 법적 제재 조치인 저작권법상으로는 효과적인 제재 방법이 될 수 없으며 기능적인 법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

○ 선진국 지적재산권 연구, 교육기관 운영실태 조사

○ 산업체재산권제도에 關한 연구기관으로 기능 擴大

라. 산업체재산권제도 활용 促進을 위한 冊子 發刊

○ 특허, 실용, 의장 상표 등 權利別 問答형식 안내책자

○ 특허관리 成長事例集

○ 산업체재산권법 質疑解釋集

마. 僞造상품 유통根絕을 위한 교육 홍보 강화

○ 교육을 통한 業界 자율追放 분위기 조성

— 시·도 巡迴교육 실시(15個 시·도)

— 소비자, 상표권자 및 사용권자 교육

— 商人 및 상인단체와의 對話

— 정부 교육훈련기관에 教科目 설정 依賴

○ 弘報활동 강화

— 國·英文 팝플렛 및 주요 外國상표권 제작·배포

— T.V등 각종 언론媒體를 통한 弘報 強化

— 집중단속지역 등에 街頭캠페인 展開 <♣>